DMC리버시티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자이

공급개요

▨ 공급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고양 덕은지구 A6 BL

▨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 지하 2층 ~ 지상 24층, 7개동, 총 620세대 중 일반분양 5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※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 3에 의거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고양 덕은 이주대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입니다.
(2020.04.08. 이주대책 대상자 사전공급신청 접수 및 동 · 호수 추첨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당첨된 90세대를 제외한 530세대를 일반분양합니다.)

분양가 및 분양조건

▨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

주택형	국가유공자 등	장기복무 제대군인	장애인		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중소기업 근로자 등	철거주택 소유자
			경기도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		
84A	1 (3)	-	1 (3)	1 (3)	-	1 (3)	1 (3)	1 (3)
84B	1 (3)	2 (6)	2 (6)	2 (6)	2 (6)	1 (3)	1 (3)	3 (9)
84C	2 (6)	1 (3)	2 (6)	2 (6)	2 (6)	1 (3)	2 (6)	3 (9)
84D	-	-	1 (3)	-	-	1 (3)	-	1 (3)
계	4 (12)	3 (9)	6 (18)	5 (15)	4 (12)	4 (12)	4 (12)	8 (24)

▨ 당첨예정자 : 기관에서 "당첨자"로 선정 ·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"당첨자"가 되는 자

▨ 예비대상자 : 기관에서 "예비자"로 선정 ·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"당첨자"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

※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(예비대상자 포함)까지 가능하며,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※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,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
※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,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%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

구 분	신청 접수일	비고
입주자 모집공고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	2020.05.15 (금) 예정	• DMC리버시티자이 홈페이지 (http://dmcrivercity-xi.com) • 분양문의 : 031-926-3589 (10:00 ~ 17:00)
특별공급 청약접수	2020.05.25 (월) 예정	•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 / 08:00~17:30) •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(10:00~14:00까지 / 만 65세 이상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)
당첨자 발표	2020.06.04 (목) 예정	•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DMC리버시티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자이

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준비사항

- **청약저축/청약부금 ▶ 청약예금 전환 –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** (변경후 청약저축으로 재변경 불가)
- **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–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** (큰 주택규모 청약예정 시,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)
- **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–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충족**
- **해당지역 전입일 –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**
- **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– 청약접수일까지 충족** (전입 등의 사유 시)

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

구분	비고
1회 한정 / 자격요건 / 자격제한 / 유의사항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**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**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• **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/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/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**할 수 없습니다. (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) • **'소형 · 저가주택 등'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**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 •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**합니다. **(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)** •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·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.(1회 특별공급 간주) •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무주택 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**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**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※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합니다. [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'수도권 및 투기 · 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 선정 제한] **무주택세대구성원** 가. 주택공급신청자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–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–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–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
입주자저축 자격 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**– 기관추천 특별공급 (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,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)** ① 청약예금 : **가입 후 6개월이 경과**하고, 납입금액이 지역별/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: **가입 후 6개월이 경과**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: **가입 후 6개월이 경과**하고,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/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(전환)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: **가입 후 6개월이 경과**하고,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/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**입주자저축 예치금액** 구 분 / 경기도 (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) / 서울시 (특별시 및 부산광역시) / 인천시 (그 밖의 광역시) 전용면적 85㎡ 이하 / 200 만원 / 300 만원 / 250 만원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3항 별표2 [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]에 따라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.

DMC리버시티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자이

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신청 자격
자격요건 / 유의사항	• 대상자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▨ 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 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(지역별 예치금액 이상,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) [※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] •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•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 · 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 –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추천 기관부서	구분 / 해당기관 / 연락처 국가 유공자 등 / 장기복무 제대군인 :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: 031-820-0451 장애인 :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: 031-8008-4329 장애인 :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: 02-2133-7462 장애인 :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: 032-440-2968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: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: 02-2225-6378 중소기업 근로자 :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: 031-201-6935 철거주택 소유자 :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 : 031-930-9726 ※ 국가 유공자 등 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, 5 · 18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
당첨자 선정방법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(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)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
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

구분	비고
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	•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 ·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· 호수를 결정합니다. •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. •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%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(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) •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,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,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•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,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· 호수를 공개한 후 동 ·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·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. (동 ·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) •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·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 •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· 호와 미계약 동 ·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DMC리버시티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자이

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

구분	비고
유의사항	• 2018.05.04. 개정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,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(청약 Home)을 원칙으로 하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(견본주택)가 가능합니다. • 인터넷 청약(한국감정원 청약Home)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, 방문접수(견본주택) 시 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 •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 • **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**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**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**하여야 하며,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•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(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)하고,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. •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,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,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 •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(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)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,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,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 제8항에 따라 **부적격통보를 받고,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**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**당첨일로부터 '수도권 및 투기 · 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 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**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 • 예비입주자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(동·호수 배정 및 계약)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. 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동 ·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. [예비입주자의 동 · 호수 배정일(당첨일)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] 또한,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·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.

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(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사무소 청약 접수 시 제출)

구분	해당서류	대상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본인	–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(www.applyhome.co.kr)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– 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, 철거주택 소유자의 경우 제외 ※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주민등록표등본		–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	–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–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주민등록증		–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
추가서류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–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대리인 접수 시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–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본인 발급용)
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–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세대구성원, 지역우선,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니다.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※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(검증)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,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의 개정 · 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청약신청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,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바랍니다.

DMC리버시티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자이

DMC리버시티자이 투시도

※ 본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, 조경 식재 및 시설물,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(개발계획, 주변건물 현황, 산, 조명, 외부식재 등)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뿜칠, 페인트로 마감되며,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뿜칠,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, 인 · 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DMC리버시티자이 입지환경

강변북로와 자유로를 이용한 **교통 프리미엄**

- 강변북로,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는 쾌속교통 입지
- 가양대교와 올림픽대로, 내부순환도로 등 광역 교통망

주거부터 교육, 편의까지 **미래비전 프리미엄**

- 총 4,668세대 계획 및 약 64만㎡ 개발규모
- 덕은지구 내 초 · 중학교 신설(예정)과 편의시설 계획

상암DMC의 인프라를 누리는 **생활 프리미엄**

- 미디어와 월드컵경기장 등 상암DMC의 생활인프라
- 한강과 월드컵공원, 대덕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

덕은지구에서 만나는 '자이' **브랜드 프리미엄**

-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(부동산114, 브랜드스탁) 수상
- 세계조경가협회 주거부문 수상 등 대한민국 주거명작 '자이

※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(출처 : 국토교통부 고시제2019-646호) ※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(출처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245호)
※ 수색 · DMC역 역세권개발사업 (출처 :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408호) ※ 서울-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(출처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723호)
※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(출처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61호) ※ 원종-홍대선 :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(출처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374호)
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상기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연,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이는 당 사업과 무관합니다.